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5118947 판결 [구상금 및 손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A

2.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6,799,580원 및 그 중 225,770,241원에 대하여 2022. 3. 8.부터 2022. 7. 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1. 3. 4. 접수 제24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각 신용보증약정 6조(사전구상) 1항 9호는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 부실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때 피고 A은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손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등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은 2021. 3.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종이류 등의 물품을 거래하고 있었다),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1. 3. 4. 접수 제249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1. 1. 13.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21. 10. 13.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신용보증계약 6조 1항 9호에 따르면 2021. 10. 13.경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1. 3. 4.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계약 체결이 전인 2021. 1. 13. 피고 A은 조세를 체납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후 2021. 10. 13.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앞서 본 대출채무 합계 260,802,592원, D조합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 56,600,000원, 체납된 조세채권 1억 원, 합계 417,402,59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85,940,100원(별지 목록 1, 2항 각 부동산 84,800,000원, 3항 부동산 1,140,100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당시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39,517,57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당시 피고 A으로부터 조세체납은 100만 원 단위의 연체로 곧 납부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동종 업계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고 회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여 그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서 피고 회사도 체납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을 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법리에 비추어 당시 피고 회사가 피고 A의 진술을 믿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별지